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4
----------	-----

제출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8조제5호)
- 나.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 (2)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결제 시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적용 유효기간) 제8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각 기관이 교육 또는 행사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2. 서울특별시 직원단체 또는 직원동호회가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3. 국가기관, 공공단체, 서울시 자치구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시 50% 감액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사용 시 50% 감액 <p><신 설></p>	<p>제8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울특별시 각 기관이 교육 또는 행사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2. 서울특별시 직원단체 또는 직원동호회가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 시 전액 면제 3. 국가기관, 공공단체, 서울시 자치구 또는 비영리기관이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 시 50% 감액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사용 시 50% 감액 5. <u>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결제 시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u>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단위:천원)

구분	시설사용료 수입		
	감면액 추계(A-B)	감면이전 징수 추계(A)	감면이후 징수 추계(B)
5%감면 적용시 (실감소분 1.5% 적용) '19년6월~12월	467	31,110	30,643

4. 작성자

부서명 : 인재개발원 인재기획과 성명 : 홍대화 주무관

(3488-2058)